## 복리후생 관리규정

#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【목적】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【적용대상】이 규정은 당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 2 장 보건관리

제 3조【보건관리】임·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업안전보건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제 4조【건강검진】①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법정 검진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.

-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등 기타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  - ③ 임•직원의 배우자에 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5조【치 료】① 임직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② 치료 기간 중 휴직등 사유 발생 시 당사 취업규칙 제5절 휴직에 따른다.

### 제 3 장 복지

제 6조【기숙사】①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과 사업장의 특성상 우수인력모집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경우 기숙사의 건립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다.

- ② 기숙사 입소대상은 인근 지역 외 근무자로 한다.
- ③ 직접 건립한 기숙사외 임차를 한 경우에는 숙소운영규정에 따른다
- 제 7조【경조휴가 및 경조비】① 목적 :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가 축의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을 둔다.
  - ② 신청방법 : 신청인은 별첨1)경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에

제출하다.

- ③ 지급방법: 주관부서는 별첨1)경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별첨2)경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
  - ④ 대상 : 당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에 있는자는 제외한다
- 제 8조【회식비】① 목적 : 부서별 팀웍 및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사전 보고 후 부서 자체적으로 회식을 할수 있다.
  - ② 부서별 회식은 자체적으로 자유스럽게 진행하며 회식비 한도는 인당 30,000원으로 정한다.

#### 제 4 장 재해보상

제 9조【요양보상 및 휴업보상】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며 요양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급여규정 제5장에 따른다.

제 10조【장해보상】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보상을 실시한다.

제 11조【유족보상 및 장례비】근로기준법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제 12조【관례법령준용】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#### 부 칙

#### 제 1조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경조금 지급 신청서			주	담 당	팀 장	임 원			
			관 부						
			서						
아래와 같이 경조금을 신청합니다.									
신청부서		신청자							
신청금액		1							
신청내역									
	내역	:	결혼	□출산	□사망 □	기타			
신청사항	피신청자		성명						
		신청인	인과의 관계						
<u>첨부 및 증빙서류</u>									

#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기준

구 분	내 용		휴가일수	금 액	비고	
축의금	결혼	본인	7일	500,000원	화환	
		자녀	2일	200,000원	화환	
		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	1일	100,000원		
	출산	배우자	5일 (유급3일)	100,000원		
		본인	90일	100,000원		
조의금 시		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	5일	500,000원	조화	
		조부모	3일	200,000원	조화	
	사망	자녀	5일	500,000원	조화	
		형제자매	3일	300,000원	조화	
		백(숙)부모	2일	100,000원		

<sup>※</sup> 경조휴일은 휴일을 포한 산정한다.

<sup>※</sup> 축하 및 조의화환의 기준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.

<sup>※</sup> 경조금 지급기준에 없는 경조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0조(특별휴가)에 따라 휴가를 실시 한다.